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42명(7급 22명, 8급 17명, 9급3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3호를 삭제한다.

5.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별표 4 중 관세주사보 “84”를 “76”으로 하고, 관세주사보 76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를 신설하며,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물주사보 1”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를 “5”로 하며,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다음에 “관세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물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를 신설한다.

별표 4의2 중 관세주사보 “87”을 “79”로 하고, 관세주사보 79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를 신설하며,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물주사보 1”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를 “5”로 하며,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다음에 “관세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물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관세서기보 “3”을 “2”로 하고, 관세서기보 2 다음에 “관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를 신설한다.

별표 6의2 중 관세서기보 “3”을 “2”로 하고, 관세서기보 2 다음에 “관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관세주사보 “18”을 “16”으로 하고, 관세주사보 16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를 신설하며,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7의2 중 관세주사보 “18”을 “16”으로 하고, 관세주사보 16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를 신설하며,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관세주사보 “884”를 “873”으로 하고, 관세주사보 873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를 신설하며,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4”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4”로 하며,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를 “4”로 하고, 관세서기 “1,022”를 “1,005”로 하며, 관세서기 1,005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6”를 신설하고,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6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를 신설하고,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신설하며,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신설하고,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다음에 “관세서기 · 공업서기 · 해양

수산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신설하며, 관세서기보 “719”를 “718”로 하고, 관세서기보 718 다음에 “관세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를 신설한다.

별표 8의2 중 관세주사보 “890”을 “879”로 하고, 관세주사보 879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를 신설하며,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4”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4”로 하며,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를 “4”로 하고, 관세서기 “973”을 “956”으로 하며, 관세서기 956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6”를 신설하고,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6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를 신설하고,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신설하며,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신설하고,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다음에 “관세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신설하며, 관세서기보 “676”을 “675”로 하고, 관세서기보 675 다음에 “관세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심사국) ①·② (생략)	제5조(심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u>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u>
6. ~ 21. (생략) ④ 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 12. 삭제 13. <u>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u>	6. ~ 21. (현행과 같음) ④ ----- -----.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14. (생략) ⑤·⑥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 · 관세주사보	· · 84	· · 76	-8
<u>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u>	<u><신설></u>	2	+2
<u>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u>	<u><신설></u>	1	+1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5	+1
<u>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신설></u>	1	+1
<u>관세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 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신설></u>	3	+3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관세주사보	87	79	-8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신 설>	2	+2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신 설>	1	+1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5	+1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 설>	1	+1
관세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 설>	3	+3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관세서기보	3	2	-1
관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신 설>	1	+1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관세서기보	3	2	-1
관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신 설>	1	+1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관세주사보	· <u>18</u>	· <u>16</u>	-2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신 설>	<u>1</u>	+1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 설>	<u>1</u>	+1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관세주사보	· <u>18</u>	· <u>16</u>	-2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신 설>	<u>1</u>	+1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 설>	<u>1</u>	+1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관세주사보	· · <u>884</u>	· · <u>873</u>	-11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신 설>	<u>4</u>	+4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신 설>	<u>4</u>	+4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u>	<u>4</u>	+1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u>	<u>4</u>	+2
· · 관세서기	· · <u>1,022</u>	· · <u>1,005</u>	-17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신 설>	<u>6</u>	+6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신 설>	<u>4</u>	+4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신 설>	<u>1</u>	+1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신 설>	<u>2</u>	+2

관세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물 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신 설>	<u>4</u>	+4
·	·	·	
·	·	·	
관세서기보	<u>719</u>	<u>718</u>	-1
관세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 수산물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신 설>	<u>1</u>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관세주사보	<u>890</u>	<u>879</u>	-11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신 설>	<u>4</u>	+4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물주사보	<신 설>	<u>4</u>	+4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u>	<u>4</u>	+1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u>	<u>4</u>	+2
·	·	·	
·	·	·	
관세서기	<u>973</u>	<u>956</u>	-17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신 설>	<u>6</u>	+6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물서기	<신 설>	<u>4</u>	+4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신 설>	<u>1</u>	+1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신 설>	<u>2</u>	+2

관세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물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신 설>	<u>4</u>	+4
·	·	·	
·	·	·	
관세서기보	<u>676</u>	<u>675</u>	-1
관세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물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신 설>	<u>1</u>	+1
·	·	·	
·	·	·	